

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

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5일 이내	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	
	소재지	본사	(전화번호:)	
		사업장	(전화번호:)	
신청내용	기술명칭			
	기술형태			
	기술특성			

신청사유

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의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, 주요 주주현황, 매출액,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2.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3.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4.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5.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6. 그 밖에 해외 인수·합병,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사전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산업통상자원부	→	검토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	→	결정 산업통상자원부	→	신청인에게 통지 산업통상자원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